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의원 추가 발언시간 및 점자·음성 지원 등〉

■ 서미화·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90호)

2025. 2.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김예지 · 조인철 · 염태영 · 박지원 · 송재봉
이성윤 · 이기현 · 박주민 · 이재강 · 복기왕 · 강준현
김남희 · 오세희 · 이수진 · 박해철 · 권향엽 · 위성곤
박홍배 · 임미애 · 박희승 · 박범계 · 허영 · 이병진
김소희 · 정준호 · 최수진 · 윤준병 · 추미애 · 김선교
조계원 · 김문수 · 허성무 의원(33인)

2. 제 안 일 : 2025. 1. 16.

3. 회 부 일 : 2025. 1. 17.

※ 의안번호 : 759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장애의원에 대한 추가 발언시간 부여(안 제60조제1항)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시간을 정함에 있어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고 함)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0조제1항 단서).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u>정하여야 한다.</u>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 ----- ----- -----. ----- ----- ----- -----정 <u>하되,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위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을 주어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0조제1항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위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 대하여는 추가 발언시간을 주도록 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현행법 제122조의2는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의 질의 시간을 의원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개정안은 대정부질문 질의시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에 대하여도 장애의원에 대한 추가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의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체계·자구 사항으로서, 현행법 제122조의2제3항이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추가 질문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의 통일성 측면에서 개정안도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문언의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1)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

⑤ ~ ⑧ (생략)

2) 이는 동 개정안 제60조제1항 뿐만 아니라, 제70조제6항, 제151조제2항의 각 개정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위원회 문서 관리 시 점자·음성 제공 방식 활용(안 제70조제6항)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를 관리할 때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위원을 위하여 점자 및 음성 제공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위원을 위하여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현행법 제70조는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서류 등을 위원회의 공식적인 문서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³⁾

3) 「국회법」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위원회의 문서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자체 생산되는 것과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보고·제출된 것이 있음. 전자의 예로는 각종 안전의 심사보고서, 위원회의 공청회·청문회 등 경과에 관한 간행물, 위원회의 각종 통계 등 현황, 기타 위원회의 처리문서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관 부처 등의 현황 또는 현안보고서, 안전의 제안설명서 및 참고자료, 안전의 심사 또는 국정감사·조사 시 보고 또는 요구자료, 국가기관 및 각종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송부된 각종 자료 등이 있음⁴⁾.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위원을 위하여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위원들이 위원회의 문서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위원회에서 위원의 의정활동은 위원회에서 생산·제출된 각종 보고서·자료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형평성 있는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의 범위와 종류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이 모든 문서를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4)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24.7., p. 341.

점자와 음성 제공 방식으로 변환하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예산·인력의 제약으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별 문서의 관리 방식 뿐만 아니라 점자정보단말기⁵⁾, 문자음성변환(TTS:Text to Speech) 프로그램 활용지원 등 장애의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주요 지방의회 조례⁶⁾의 규정례를 살펴보면,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점자정보단말기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의 출력과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로, 9개의 버튼이 달린 점자 입력 키보드와 32칸의 점자 표시가 가능한 점자 출력 패드, 음성 출력을 위한 스피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PC)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웹페이지 중 “시각장애인의 이해”, <http://www.hsb.or.kr/client/visually/visually6.asp>)

6)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등 (구체적인 규정사항은 참고자료를 참조)

3.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허용(안 제151조제2항)

개정안은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 보조견 또는 물건 등과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51조제2항).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생략) <신설>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또는 물건과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현행법 제151조는 회의장 안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개정안은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0조⁸⁾

7)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24.7., p. 677.

8)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또는 물건과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회의장 출입에 있어서 장애의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건의 경우에는 회의장 반입이 가능함.

따라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회의장 반입허용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14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⑤ (생략)

참고자료 **지방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5.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6.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 기기·장비의 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방법,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회의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
6.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